[붙임 1] 스타기업 공고문

대전관광공사 공고 제2022 - 134호

2022 대전 · 세종 관광 스타기업 선정 공모

대전광역시, 세종시와 대전관광공사는 지속성장 가능한 유망 관광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스케일업(Scale-Up) 육성·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전·세종 관광 스타기업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2, 07, 22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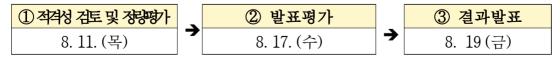
대전관광공사 사장

1. 모집 개요

- □ 모집 기간 : 2022. 7. 22. (금) ~ 8. 10. (수)
- □ 공모 분야 및 선정규모
 - (대전·세종관광기업) 대전·세종 소재 관광사업체 5개사
- □ 응모대상 및 자격
 - 대전·세종 지역 내 본사가 위치한, 관광사업 또는 관광분야 융복합 사업 영위중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
 -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로부터 업력 만 3년 이상인 기업('19.7.22 이전 개업)
 - 최근 3개년도('19년 1월 ~ '21년 12월) 평균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인 기업
 -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※ 공모 사업계획서상 , 사업화자금의 20% 자부담 필수 기재

□ 공모 단계별 선정 규모

O (심사일정)



- O (적격성 검토)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
- (정량평가)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사업신청서 및 내용 사실 여부 확인
- (발표평가)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성과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토대로한 PT발표

○ (심사항목 및 배점)

정량평가(20점)		
평가항목	세부평가 항목	배점
3년 평균 매출액	최근 3년간(19년 1월 ~ ' 21년 12월)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- 5000만원 이상 : 2점 / 1억 이상 : 4점 / 2억 이상 : 6점 / 3억 이상 : 8점 / 4억 이상 : 10점	10
상시 근로자 수	4대보험 가입자명부 - 3명 미만 : 1점 / 3명 이상 : 2점 / 5명 이상 : 3점 / 10명이상 : 4점 / 15명이상 : 5점	5
외부 투자유치 실적	1) 투자계약서 / 협약서, 2) 자금 납입 증명서 - 5천만원 이상 : 1점 / 1억 이상 : 2점 / 2억 : 3점 / 4억 : 4점 / 5억 : 5점 ※ 1), 2) 모두 제출된 실적만 인정	5
* 정량평가 5점 미만 기업은 과락으로 발표심사 제외		

발표평가 (80점)		
평가항목	세부평가 항목	배점
문제인식	1-1. 제품·서비스에 대한 해결과제 - 자사가 개발(보유)하고 있는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 등	10
	1-2.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- 경쟁자 등의 제품·서비스 등과 비교 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등 - 고객의 니즈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등	
실현 가능성	2-1. 제품·서비스의 개발(개선)방안 - 자사에서 인지한 제품(서비스)에 대한 문제점 개선(개발) 방안, 현재 구현정도,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(자체, 외주) 등	5
	2-2.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- 고객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	5
	2-3.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방안 - 시장·경쟁자 등의 제품·서비스 대비 문제점에 대한 개발(개선) 방안, 우위요소, 차별화 전략 등	10
성장전략	3-1.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- 자금의 필요성,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(정부지원금+대응자금)의 사용계획을 기재	10
	3-2.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- 내수시장 : 주 소비자층, 시장진출 전략, 그간 실적 등	10
	3-3. 중장기 목표 및 EXIT전략 - 사업계획에 따라 제작한 시제품, 서비스, 플랫폼을 활용한 향후 기업의 중장기 성장전략 및 EXIT 전략	10
과제수행 능력	4-1. 참여인력의 보유역량 - 대표자 및 직원(업무파트너 포함)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, 기술력, 노하우 등 기재	10
	4-2. 자사의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보호노력 -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사의 자체 기술개발 역량을 기재 - 개발(한)하는 제품서비스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등 기재	
사회적 기여도	5-1.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 기여도 - 지역고용, 매출증대,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	10

□ 스타기업 선정 혜택

- (사업화 자금지원) 공모전 결과 자금 지원 대상 선정기업에 한함.
 - 최우수 1개사 : 3,000만원 / 우수 2개사 : 4,000만원 / 장려 2개사 : 2,000만원
- (교육 및 컨설팅) 액셀러레이팅 교육, 경영 및 창업 컨설팅 등
- (센터 시설 이용) 사무공간, 회의실 등 필요시 수요조사 후 입주 지원

□ 주최 및 주관

○ 문화체육관광부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한국관광공사, 대전관광공사

2. 공모전 참가 신청

- □ 접수 방법 및 기간
 - (접수기간) 2022. 8. 3.(수) ~ 8. 10.(수) 17:00 마감
 - (접수방법) 이메일 (dstourbiz@dime.or.kr) 접수 / 우편접수 불가
 - (서류양식) 대전관광공사 및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
 - (문의처)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042-253-0420

□ 참가 유의사항

- 신청자는 공고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- 공모전 **최종 선정업체**는 센터 주관 **액셀러레이팅 사업 참여 필수**(9월 예정)
- 최근 2년 ('20 ~ '21년)간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 **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** 참가하여 선정된 후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
- 접수 마감 후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
- 신청자는 다음 내용들에 해당 되는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·향후 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제한·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공고문 붙임 양식 미준수한 경우
 -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,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
 -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제출서류가 모방 및 표절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한 경우
- 사업 지원금은 공모 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 계획에 의거 <u>기업에서 비용을 선 지출</u>하고 협약 종료일 전에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출검증 후 지급함(선 지출 및 사후 정산)
- 선정기업은 공사와 스타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검증 결과 공모 시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조치 또는 향후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관광관련 융복합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자로 등록(지정)되지 않은 기업은 『관광진흥법』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관광 편의시설업 중 타목 '관광지원서비스업' 등록 안내
 -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『통계법』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, 운수업, 숙박업, 음식점업, 문화·오락· 레저스포츠업, 건설업,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. 다만, 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.

□ 신청 제외 대상 *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- 예외 : 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 - 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 - 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 - 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 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- 예외 : 1.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 - 2. 국세 ·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
-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제조치를 받고 있는 자(기업)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(기업)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및 「동 사업 세부 관리 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